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: 173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자연학습과로 편제되어 운영하였으나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의 지도 감독 업무가 체육 청소년과로 이관되어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자연학습원의 지도·감독부서 조정
 - “산림환경연구소장”을 ⇒ “체육청소년과장”으로, “소장”을 ⇒ “과장”으로 함

□ 의안전문 : 볼임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볼임

□ 관련법령 발췌 : 따로 볼임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소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체육청소년과장(이하 “과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내지 제4항, 제9조제2항·제3항 및 제11조제1항중 “소장”을 각각 “과장”으로 한다.

부 .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운영계획) ① <u>산림환경연구소장</u> (이하 "소장"이라 한다)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(생략)	제5조(운영계획) ① <u>체육청소년과장</u> (이하 "과장"이라 한다)… ②(현행과 같음)
제6조 ①(생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·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이 조례 시행 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연수신청서를 <u>소장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6조 ①(현행과 같음) ②
③ <u>소장</u> 은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연수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연수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.	③ <u>과장</u>
④ <u>소장</u> 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.	④ <u>과장</u>

관 계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

제11조(문화관광국)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4. 건전 청소년 육성

□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

제13조(문화관광국에 두는 과) ①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, 체육청소년과, 관광과, 건축문화과를 둔다.

②~③(생략)

④체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1. 자연학습원 지도감독 업무